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

농림부

본고는 지난 8월 5일 농림부에서 공포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농림부령 제1424호)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한 것이다.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개정(2001. 12. 31, 법률 제6571호)으로, 도축업자 등에 게 자체위생관리기준 등을 작성·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 등을 포함하는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골자

- 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축산기술연구소 등과 축산물위생검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등을 검역원장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 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 등을 포함하는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
- 다. 가공·가열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에서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식용란의 검사기준을 정함(안 별표 4 제3호 신설).
- 라. 도축업자가 자체위생관리기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2월, 3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도축업자 및 축산물가공업자가 자체위생관리기준 또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함(안 별표 11 제2호가목2.·나목3. 신설).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칙중개정령안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식용란)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닭·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제2조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을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 제2호 및 동조 제3항중 “검사원”을 각각 “검사관”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생관리기준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생관리기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서 작업 개시전과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영업자는 매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부터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검역원장은 검사관으로 하여금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장의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중 “법 제9조”를 “법 제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도서지역”이라 함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

⑤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제2항중 “검사원”을 각각 “검사관”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및 본문중 “검사원”을 각각 “검사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검사원”을 “검사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영 제18조의2제1호에서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물”이라 함은 별표 7제2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검사원”을 각각 “검사관”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①검역원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 축산기술연구소
3. 식품의약품안전청
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5. 시·도가축위생시험소,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위생검사기관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외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은 검역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검역원장이 지정한다.

③검역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별로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실 평면도
2. 검사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내역
3.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4.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②제1항제4호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
2. 제품종류별 검사기간

3. 검사의 절차와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4.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그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검역원장이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그밖에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
4. 검사수수료

②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검사업무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시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의하여 검역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보고 및 지도·감독 등) ①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매 반기종료후 1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역원장은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관리하거나 그 운영에 대한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능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검사대장은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중 “제품생산 개시후”를 “제품생산 개시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로 한다.

제4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제3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제45조제1호중 “제1종 전염병”을 “제1군전염병”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3종 전염병”을 “제3군전염병”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운용하고 있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또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이를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제54조제1항제3호중 “반기별 생산실적을 반기종료후 15일이내”를 “연도별 생산 실적을 당해 연도 종료후 1월 이내”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검사원”을 “검사관”으로, “검사원증”을 “검사관증”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2항, 법 제40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중 법 제12조제4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별표는 주요골자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발췌하여 게재한다.

별표 4 제2호다목(2)(나)2)중 “1.030 내지 1.034”를 “1.028 내지 1.034”로 하고, 동표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동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식용란의 검사

가. 식용란의 표면은 분변·혈액·난내용물·깃털 등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나. 식용란은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아야 한다.

다. 식용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중 알의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가공·가열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에서는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별표 11 제2호가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 4.가 나.의 위반행위란 및 동목 10.의 위반행위란중 “검사원”을 각각 “검사관”으로 한다.

| | | | |
|---|--------|---------|--------|
| 2.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 위반 | | | |
| 가. 자체위생관리기준 또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1월 | 영업정지2월 | 영업정지3월 |
|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 또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15일 | 영업정지1월 |

별표 11 제2호나목3.을 2.로 하고, 동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목7.의 위반행위란중 “검사원”을 “검사관”으로 하고, 동목10.의 위반행위란중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법 제27조제1항제7호”로 하며, 동목11.가.(2)의 위반행위란중 “나목 또는 마목”을 “나목·마목 또는 사목”으로 하며, 동목11.나.(2)의 위반행위란중 “제3호 다목”을 “제3호라목·자목·차목·카목·타목 또는 파목”으로 한다.

| | | | |
|-----------------------------|--------|---------|--------|
| 3. 법 제8조제2항 위반 | | | |
|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1월 | 영업정지2월 | 영업정지3월 |
|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15일 | 영업정지1월 |

별표 11 제2호다목4.의 위반행위란중 “검사원”을 “검사관”으로 하고, 동목8.가.(3)의 위반행위란중 “라목”을 “자목”으로 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참조>

농림부공고 제 2002- 51호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2001. 12. 31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되어 축산물보관업의 영업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정비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관련조항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축산물검사원의 명칭이 축산물검사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지구를 수정함(안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

나.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의 처리기한(4월)을 신설함(안 제19조제4항).

다. 위생관리기준(SSO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미시행작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 신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관련조항을 추가함(안 제25조 제1항).

라. 축산물보관업에 대한 영업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리함(안 제31조, 제32조).

마. SSOP, HACCP 미시행작업장의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금액을 상향조정함(안 별표 4 : 30만원→100만원).

신·구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제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p> <p>①(생략)</p> <p>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 <p>제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p> <p>①(현행과 같음)</p> <p>②농림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 ----- ----- ----- -----</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별표4]과태료의 금액(제32조 제4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근거법령</th> <th>위반사항</th> <th>과태료액</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생략)</td> <td></td> <td></td> </tr> <tr> <td>2.</td> <td>법 제8조</td> <td>가. 작업장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자 나.(생략)</td> <td>30만원 (생략)</td> </tr> <tr> <td>3.</td> <td>법 제9조</td> <td>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자</td> <td>30만원</td> </tr> <tr> <td>4~12</td> <td>(생략)</td> <td></td> <td></td> </tr> </tbody> </table> | 구분 | 근거법령 | 위반사항 | 과태료액 | 1. | (생략) | | | 2. | 법 제8조 | 가. 작업장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자 나.(생략) | 30만원 (생략) | 3. | 법 제9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자 | 30만원 | 4~12 | (생략) | | | <p>[별표4]과태료의 금액(제32조 제3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근거법령</th> <th>위반사항</th> <th>과태료액</th> </tr> </thead> <tbody> <tr> <td>1.</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r> <tr> <td>2.</td> <td>법 제8조</td> <td>가. ----- ----- -----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한 ----- 나.(현행과 같음)</td> <td>100만원 (현행과 같음)</td> </tr> <tr> <td>3.</td> <td>법 제9조</td> <td>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한 -----</td> <td>100만원</td> </tr> <tr> <td>4~12</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r> </tbody> </table> | 구분 | 근거법령 | 위반사항 | 과태료액 | 1. | (현행과 같음) | | | 2. | 법 제8조 | 가. ----- ----- -----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한 ----- 나.(현행과 같음) | 100만원 (현행과 같음) | 3. | 법 제9조 |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한 ----- | 100만원 | 4~12 | (현행과 같음) | | |
| 구분 | 근거법령 | 위반사항 | 과태료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법 제8조 | 가. 작업장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자 나.(생략) | 30만원 (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법 제9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자 | 3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2 | (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근거법령 | 위반사항 | 과태료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법 제8조 | 가. ----- ----- -----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한 ----- 나.(현행과 같음) | 100만원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법 제9조 |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한 ----- | 1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2 |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